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6
----------	------

제출연월일: 2025. 6. 30.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목적과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존속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 운영 조항 추가 및 상설 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1조 ~ 제3조)

- 지역유산심의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어린이안전도시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

나. 유사 기능 수행 위원회 통·폐합(안 제4조 ~ 제5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통폐합 운영

다. 존속 필요성 없는 위원회 폐지(안 제6조 ~ 제7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 조문 삭제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4.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가족복지과-23308호, 2025. 6. 2.)

개선의견	검토결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실현 직접 목적 법령(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개 조례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조문 수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반 영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조례 조문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li> <li>-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li> <li>- 위원 구성 조문에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 명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미 반 영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조례 성별 고려 조문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li> <li>- 해당 조례 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설치된 위원회와 통폐합 운영할 예정</li> </ul> </li> </ul>	

라. 입법예고: 2025. 5. 26. ~ 6. 16.(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지역연대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지역연대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한”을 “관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 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서 대행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3.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

**정)**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제275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구청장이 위촉한다.</u></p> <p>1. ~ 4. (생략)</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u></p>
<p>제19조(위원회 운영) &lt;신설&gt;</p>	<p>제19조(위원회 운영)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생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역연대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지역연대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u>
제9조(회의) ① <u>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u> ② (생략)	제9조(회의)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또는 담당·종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 (생략)</p>	<p>제1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해마다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14조(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 구성) ① ----- ----- <u>관한 다음 각 호의</u> ----- ----- -----.</p> <p>1. <u>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u></p> <p>2. <u>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 보고서 및 자체평가</u></p> <p>3. <u>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u></p> <p>4. <u>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lt;삭 제&gt;</p>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삭 제>

④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삭 제>

⑤ 민간위촉위원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 당사자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 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

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 제>

<삭 제>

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삭 제>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

<삭 제>

인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u>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p> <p>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u>위촉</u> 또는 임명한다.</p> <p>2. (생략)</p> <p>제3조(기능) <u>위원회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u></p> <p><u>&lt;신 설&gt;</u></p>	<p>제2조(구성) ----- ----- ----- ----- <u>장애인복지위원회</u>----- ----- ----- -----.</p> <p>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u>성별을 고려하여 위촉</u> 또는 임명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u>1.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2. 「<u>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 제11조제1항에 따른 <u>심의 사항</u></p> <p>3. <u>위원장이 장애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	--------------------------------------------------------------------------------------------------------------------------------

#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 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조문 전부개정 2014.10.6.>

#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u></p> <p><u>①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u></li> <li><u>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u></li> <li><u>3.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u></li> <li><u>4. 우수기업의 인증</u></li> <li><u>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u></li> <li><u>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u>&lt;삭 제&gt;</u></p>
<p><u>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p>	<p><u>&lt;삭 제&gt;</u></p>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부구청장
2. 산업안전보건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노동자 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5.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삭 제>

<삭 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삭 제>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삭 제>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  
다.

②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  
당계장이 된다.

## 근거법규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⑤ 담당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조례 등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서기
- 이 름: 이수진
- 연락처: (052)290-3064